

제 289회 임시회
2010. 4. 23.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교육사회위원회

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 4. 23.(금)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10년 4월 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2010. 4. 15,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조동욱 기획협력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학생 장학사업, 교육시설 확충사업 등의 추진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재단에서 시행할 사업을 규정(안 제4조)
 - 학생 장학사업, 후생복지 증진사업,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, 교육시설 확충사업 등
- 재단 기금의 조성재원(안 제7조)
 - 도와 시·군의 출연금, 기성회계 출연금, 개인기관 등의 기부금품,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
- 재단 운영의 주요사항 및 지도 감독(안 제9조 내지 제13조)
 - 정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
 -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도지사 승인
 -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
 -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

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
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충북도립대학 개교 10여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, 기업체, 대학 동문 및 후원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 장학사업,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, 교육시설 확충사업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설립 추진 중에 있는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

□ 따라서, 본 조례안은

- 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립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입학자원 감소 및 교육시장 개방 등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교육분야의 경쟁체제에 대비하여, 최근 잇달아 발전재단을 설립,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는 타 시도 도립대학과의 경쟁에서도 앞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,
- 교육강도를 표방하고 300억원에 육박하는 인재양성재단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의 도정방향과도 부합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
 - 목표금액인 2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 조성계획,
 - 지자체, 기업체 등 기금 지원 예상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여부,
 - 재단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방안,
 - '98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발전기금의 처리계획,
 - 인재양성재단과의 역할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 및 명칭) ①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.

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청도립대학발전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(등기)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학생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
2.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
3. 교육시설 확충사업
4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5조(임원 등)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정수,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조(공무원 파견 및 겸임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기금의 조성)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도와 시·군의 출연금
2. 기성회계의 출연금
3. 개인·기관·단체·기업체의 기부금품
4. 기금의 운영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제8조(출연)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제9조(정관의 변경 등)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11조(사업계획 승인 등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결산서 제출 등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도감독)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·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14조(재단에 대한 제재)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
2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3.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

제15조(준용)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